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등 9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·시행으로 청년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,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에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(4급 1명, 5급 1명, 6급 1명, 7급 1명)을 각각 증원하고, 교육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에 인력 3명(4급 또는 5급 1명, 5급 1명, 6급 1명)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등 9개 기관 직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, 교육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

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1. 8. 20. ~ 8. 2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음

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제3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의2. 청년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과 청년 지원정책의 협의·조정
제27조제2항 후단 중 “108명”을 “109명”으로 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,066”을 “1,070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056”을 “1,060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,015”를 “1,019”로 한다.

별표 3에 8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) 경제구조개혁국 1개 과	4명	2024년 3월 31일까지
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제2조(「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에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6. 교육 분야 청년정책의 수립·조정 및 시행

별표 1 중 총계 “642”를 “64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541”을 “544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523”을 “526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행정안전부와 그 소

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에 제6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8의2.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

별표 1 중 총계 “1,596”을 “1,59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567”을 “1,570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,497”을 “1,500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의2. 문화체육관광 분야 청년정책의 수립·조정 및 시행

별표 1 중 총계 “671”을 “674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64”를 “667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593”을 “596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의2. 보건·복지 분야 청년정책의 수립·조정 및 총괄

별표 4 중 총계 “852”를 “85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843”을 “846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812”를 “815”로 한다.

제6조(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605”를 “60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599”를 “602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576”을 “579”로 한다.

제7조(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의2. 청년주거정책의 수립 및 시행

제54조제2항 후단 중 “86명”을 “8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1,001”을 “1,00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991”을 “995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962”를 “966”으로 한다.

별표 4 제1호가목에 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) 주택토지실 1개 과	4명	2024년 3월 31일까지
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제8조(「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청년창업 정책의 수립·조정 및 시행

7의3. 산·학·연 연계를 통한 청년창업의 촉진·지원

제26조제2항 후단 중 “제외한다”를 “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”로, “41명”을 “42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475”를 “47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69”를 “473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451”을 “455”로 한다.

별표 4에 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) 창업벤처혁신실 1개 과	4명	2024년 3월 31일까지
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제9조(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금융위원회와 그 소

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·조정

제18조제2항 후단 중 “20명”을 “21명”으로 한다.

제4장의2(제21조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

제21조(평가대상 조직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21”을 “22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19”를 “223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95”를 “199”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21조제1항 관련)

조직	정원	평가기간
금융소비자국 1개 과	4명	2024년 3월 31일까지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의2(경제구조개혁국) ①· ② (생략)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5. (생략) <u><신설></u> 16. (생략)	제17조의2(경제구조개혁국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15. (현행과 같음) <u>15의2. 청년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과 청년 지원정책의 협의 · 조정</u> 16. (현행과 같음)
제27조(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) ① (생략)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한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 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<u>108명</u> 을, 3 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 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 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 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	제27조(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109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을 그 상한으로 한다.

③ (생략)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066</u>	<u>1,070</u>	+4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1,056</u>	<u>1,060</u>	+4
•	•	•	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,015</u>	<u>1,019</u>	+4
•	•	•	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고등교육정책실) ①·② (생략)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45. (생략) <u><신설></u> 47. ~ 64. (생략)	제10조(고등교육정책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45. (현행과 같음) <u>46. 교육 분야 청년정책의 수립</u> <u>· 조정 및 시행</u> 47. ~ 64. (현행과 같음)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교육부 공무원 정원표(제37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42</u>	<u>645</u>	+3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541</u>	<u>544</u>	+3
•	•	•	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523</u>	<u>526</u>	+3
•	•	•	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지방자치분권실) ①·② (생략)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68. (생략) <u><신설></u> 69. ~ 84. (생략)	제14조(지방자치분권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68. (현행과 같음) <u>68의2.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</u> 69. ~ 84. (현행과 같음)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(제59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596</u>	<u>1,599</u>	+3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,567</u>	<u>1,570</u>	+3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,497</u>	<u>1,500</u>	+3
·	·	·	
·	·	·	

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문화예술정책실) ①·② (생략)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24. (생략) <u><신설></u> 25. ~ 57. (생략)	제11조(문화예술정책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24. (현행과 같음) <u>24의2. 문화체육관광 분야 청년</u> <u>정책의 수립·조정 및 시행</u> 25. ~ 57. (현행과 같음)

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(제70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71</u>	<u>674</u>	+3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664</u>	<u>667</u>	+3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593</u>	<u>596</u>	+3
·	·	·	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인구정책실) ①·② (생략)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8. (생략) <u><신설></u> 19. ~ 42. (생략)	제11조(인구정책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18. (현행과 같음) <u>18의2. 보건·복지 분야 청년정책의 수립·조정 및 총괄</u> 19. ~ 42. (현행과 같음)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4]

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(제41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852</u>	<u>855</u>	+3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843</u>	<u>846</u>	+3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812</u>	<u>815</u>	+3
·	·	·	
·	·	·	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(제38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05</u>	<u>608</u>	+3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599</u>	<u>602</u>	+3
•	•	•	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576</u>	<u>579</u>	+3
•	•	•	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주택토지실) ①·② (생략)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21. (생략) <u><신설></u> 22. ~ 76. (생략)	제12조(주택토지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21. (현행과 같음) <u>21의2. 청년주거정책의 수립 및 시행</u> 22. ~ 76. (현행과 같음)
제54조(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략)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<u>86명</u> 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	제54조(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87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(제54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001</u>	<u>1,005</u>	+4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991</u>	<u>995</u>	+4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962</u>	<u>966</u>	+4
·	·	·	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창업벤처혁신실) ①·② (생략)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8. ~ 53. (생략)	제13조(창업벤처혁신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7의2. 청년창업 정책의 수립·</u> <u>조정 및 시행</u> <u>7의3. 산·학·연 연계를 통한</u> <u>청년창업의 촉진·지원</u> 8. ~ 53.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략) ② 중소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,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은 41명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	제26조(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외한다.</u> <u>이하 이 항에서 같다</u> ----- - <u>42명</u> ----- -----

며,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 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--	--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(제26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475</u>	<u>479</u>	+4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469</u>	<u>473</u>	+4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451</u>	<u>455</u>	+4
·	·	·	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의3(금융소비자국) ①·② (생략)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~ 27. (생략)	제11조의3(금융소비자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5의2.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·조정</u> 6. ~ 27.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략)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<u>20명</u> 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 <u><신설></u>	제18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<u>21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<u><신 설></u>	<u>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</u> <u>제21조(평가대상 조직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21</u>	<u>225</u>	+4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219</u>	<u>223</u>	+4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95</u>	<u>199</u>	+4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7